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견

양 주 시 의 회
전 문 위 원 김 형 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견

전문위원 김형열 입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지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차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의 사유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 예비비로 지출이 제한되는 사항은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여 소요되는 경비

○ 이용· 전용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 할수 있는 경우

○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외의 보조금·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안건의 2006년도 예비비로 세출예산액은 5억 9,147만원으로서,

○ 총지출 결정액은 2억 3,414만원이고 지출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와 시설비등 2건에 8,214만원을 집행하고, 집중호우 또는 태풍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망자 위로금등 9건에 1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검토하면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사유일 때 지출하는 것으로서 9건의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망자 위로금등은 정당성있는 사유에 대하여 지출하였다고 할수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소요경비와 시설비는 2006. 6. 30에 지출결정하여, 2006. 8. 30까지 지출한 예산으로서, 사전 기구증설 필요성 검토와 승인 과정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임으로 2006. 4. 28에 승인된 1회 추경에 반영 할수있었다 할것입니다

향후 예측 할수 없는 예산외의 경비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계획성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